#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6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임오경

박지원 • 이훈기 • 윤준병

위성곤 · 임호선 · 이해식

한정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	②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	
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	
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취득세를 <u>2024년</u>	<u>2027년</u>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12월 31일</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7년 12월 31일